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4. 10. 1.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 2014년 9월 12일
-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14년 9월 17일 회부
- 라. 상정일자 : 제183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
(2014. 9. 2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김정진)

가. 제안이유

- 우리구 소재 각급학교 재학생 중 우수 인재를 발굴,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예정일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운용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영등포구 장학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안 제2조)
 - 존속기한 : 2018년 12월 31일
- 위촉위원 임기 연임사항 변경 (안 제6조)
 - 연임기준 : 한 차례만 연임가능
- 위원의 결격사유 및 위촉해제를 신설 (안 제6조의2)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신설 (안 제6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기영)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지침’을 반영하여 법령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제거·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기금관리 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를 개정해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지침’에서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 등 이해충돌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규정하도록 하였음.
- 이에 개정 조례안에서는 금년 9월 30일자로 만료되는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위원의 계속된 연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착관계 방지와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기금설치와 운용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한 긍정적인 조치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장학기금은 관내 우수인재 양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2009년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한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3억 7,884만원을 조성하였음.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5 호
----------	-------

제출연월일 : 2014. 9.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우리구 소재 각급학교 재학생 중 우수 인재를 발굴,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예정일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운용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등포구 장학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안 제2조)

○ 존속기한 : 2018년 12월 31일

나. 위촉위원 임기 연임사항 변경 (안 제6조)

○ 연임기준 : 한 차례만 연임가능

다. 위원의 결격사유 및 위촉해제를 신설 (안 제6조의2)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신설 (안 제6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

나. 예산조치 : 예산조치 불필요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반영)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4.7.31~8.20, 20일간)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를 “영등포구”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를 “영등포구”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 중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사업 수행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구의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인정되는자”를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하되”를 “하되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및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에 위촉 시 금품·향응수수·배임·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재하여야 하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4.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6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7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임시회의”를 “임시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정하는”을 “인정할”로 한다.

제10조 전단 중 “범위안에서 수당”을 “범위에서 수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를 “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결산보고서를 매”를 “결산보고서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선발된 자”를 “선발된 사람”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7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학식과 덕망이 있고 장학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자 중 7명 이내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의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고,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⑤、⑥ (생략)

〈신설〉

〈신설〉

1. (현행과 같음)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3. -----
----- 인정되는 사람 -----
- ④ ----- 하되 한 차례만 -. -----

-----.
- ⑤、⑥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및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의 위촉 시 금품, 향응수수, 배임, 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재하여야 하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4.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6조의3(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2. (생략)
-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생략)

제10조(수당의 지급)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
-----.

- 1. 2. (현행과 같음)
- 3. 그 밖에 -----
----- 회의에 부치는 --

제8조(회의) ① -----
----- 임시회-----
-----.

② -----

----- 인정할 -----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수당의 지급) -----
----- 범위
에서 수당-----.

-----.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

----- 구의회 -----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장학생 자격) 장학생은 가족과 함께 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장학금 신청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지역인재육성 장학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장학금 지급)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하며, 지급금액과 시기는 매년초 정기회의때 결정한다.

② (생략)

제16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2. (생략)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4. (생략)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 결산보고서를 -----

-----.

제14조(장학생 자격) -----

----- 사람으로 -. -----

-----.

제15조(장학금 지급) ① -----
- 선발된 사람-----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지급의 정지) -----
--- 사람이 -----

-----.

1. 2. (현행과 같음)
3. ----- 그
밖의 -----
4. (현행과 같음)

제17조(시행규칙) ----- 조례의 시행에

-----.